

종 합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안동시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3. 1.



〈 재심의 결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17	☉ ☉ 과	▽▽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1				1	53,150		
18	●●●●●●●●과	탐방로조성사업 보행교 설치공사 토지 보상 협의 부적정 등		1						
19	■ ■ ■ ■ 과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1	426,029		
20	■ ■ ■ ■ 과	■■■■■■■■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산출 부적정 등		1						
21	◆◆◆◆◆과	▼▼운동장 우회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1							
22	☆ ☆ ☆ ☆ 과	■■■■면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1		1	22,600				
23	◆◆◆◆과	안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부적정	1				1	157,000		
24	▲▲▲(○○○○센터)	대학원(야간) 위탁교육기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1		1	1,108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직렬조정 인사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안동시 ■■■■실에서는 퇴직, 승진후속 등 결원에 대한 승진 임용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하고,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과 시·군의 6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 대상이 되고,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하며,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서는 안동시 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 ■■■■실에서는 결원에 따른 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요인을 산정할 때 결원 발생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거나, 복수직 정원이 있는 경우 그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직렬간에 직렬을 조정하여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 후 승진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19. 8. 17.자 인사부터 2022. 9. 3.자 인사까지 6차례의 승진임용에서 직렬 간 승진 소요기간 불균형 심화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표]와 같이 복수직 정원이 없는 직렬간에 직렬조정을 하여 5급 2명, 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총 12명을 승진임용하였다.

[표] 복수직 정원 없는 직렬간 조정 후 승진 현황

*승진의결 당시 후보자명부 최하위자 기재

연 번	승진의결일	임용일	결원발생 (조정 전)		승진의결* (조정 후)		비고
			사유	직급	직급	이름	
1	19.06.25.	19.08.17.	도 전출	◁◁5 (■■■■■)	◀◀◀◀5	■■■■■	
2	19.07.16.	19.08.17.	6급 승진후속	▷▷7	▶▶▶▶7	■■■■■	승진대상자 없음
3	20.01.09.	20.01.20.	기결원	♠♠7	♠♠7	●●●●	승진대상자 없음
4	20.06.05.	20.07.01.	6급 승진후속	▷▷7	◎◎7	▲▲▲	승진대상자 없음
5	20.06.05.	20.07.01.	상위직급 직렬 조정에 따른 회귀	◎◎8	▷▷8	▽▽▽	▷▷7→◎◎7
6	20.12.21.	21.01.01.	5급 승진의결	◆◆6 (■■■■■)	▷▷6	●●●●	직렬 간 경력, 적체 현황 등 고려
7	20.12.21.	21.01.01.	7급 승진후속	♡♡8	♣♣8	■◀■	승진대상자 없음
8	20.12.21.	21.01.01.	7급 승진후속	◇◇◇◇8	▷▷8	●●●●	승진대상자 없음
9	22.01.10.	22.03.19.	5급 승진의결	▷▷6 (■■■■■)	♠♠6	▲▲▲	♠♠5→ ◆◆(▷▷)5

연 번	승진의결일	임용일	결원발생 (조정 전)		승진의결* (조정 후)		비고
			사유	직급	직급	이름	
							직렬조정 회귀 필요
10	22.07.05.	22.09.03.	퇴직준비교육	◀◀◀◀5 (▨▨▨▨)	♠♠5	가가가	최초임용일 및 현직급 임용일 등 고려
11	22.07.19.	22.09.03.	정년퇴직	♠♠6 (▨▨▨▨)	▶▶▶▶6	다다다	♠♠직렬 승진후보자 경력이 적음에 따라 승진적체 직렬인 ▶▶▶▶로 직렬조정
12	22.07.19.	22.09.03.	승진후속	♠♠7 (▨▨▨▨)	◀◀◀◀7	다다다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등 고려하여 ◀◀◀◀ 직렬조정 (◀◀◀◀5 → ♠♠5 직렬조정 회귀 필요)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장등록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안동시 □□□□실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 설치 승인 업무와 설립(설치)이 완료된 공장의 등록 및 공장등록 대장의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기준공장면적을 미충족 업체 공장등록 부적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제8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장설립승인 대상 이외의 공장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제16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

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안동시 □□□□실에서는 공장설립승인 대상 이외의 공장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공장등록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이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 적합할 경우 공장등록을 처리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부서에서는 [표 1]과 같이 공장건축면적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장건축면적률이 기준공장면적률 12%에 미달하는 8.2%임에도 등록완료 처리하였다.

[표 1] 기준공장면적률 미충족 업체 공장등록 부당처리 현황

구분	처리일자	공장명	공장소재지	업종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건축 면적률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공장 등록	'21.2.3.	◆◆◆◆	ㄱ면 ㄴ길	장류 제조업	12%	8.2%	2,380	195.44

2. 공장등록 변경사항 지연신청 과태료 미부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업종, 세부업종 변경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6]에 따라 공장부지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 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90만 원(1회 위반 시), 공장부지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 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100만 원(1회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시 □□□□실에서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사항 중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등을 변경한 후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실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사항 중 회사명, 대표자 성명 등을 변경한 후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6건에 대하여 과태료(5,600천 원)를 부과하지 않았다.

[표 2] 공장등록 변경사항 지연 신청 과태료 미부과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회사명	변경사항	실제 변경일	변경 신청일	신청 수리일	지연기간	미부과 과태료
1	AAAAAA	회사명, 대표자	2018.1.1.	2019.8.23.	2019.9.9.	16개월	900
2	(주)BBBB BB지사	대표자	2018.1.3.	2019.9.6.	2019.9.27.	17개월	1,000
3	(주)CC	업종 추가	2018.5.4.	2020.3.12.	2020.3.25.	20개월	900
4		대표자	2019.1.2.	2020.6.29.	2020.7.6.	16개월	900
5	DDDD영농조합법인	부대시설면적	2019.11.25.	2020.4.13.	2020.5.6.	3개월	1,000
6	(주)EEEEEE	업종	2018.12.31.	2020.7.22.	2020.7.31.	17개월	900
합계	6건						5,600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미부과된 과태료 5,600,000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등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안동시 ■■■■■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등 상권활성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수의계약) 부적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에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3조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안동시 주차장 조례」 제9조 제1항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①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③ 전통시장 상인단체. 다만, 전통시장 인근지역 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해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③ 전통시장의 경우 수의계약조건으로 대부료 80% 이내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단체가 아닌 ‘△△△△△ △△ 상인회’에 공영주차장을 관리 위탁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대부료 80% 이내로 경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안동시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 △△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면서 ‘△△△△△△△ 상점가 상인회’는 안동시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법령해석 착오로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하였고, [표 1]과 같이 위탁료(대부료) 산출금액을 80% 감면하여 위탁료를 부과하였다.

[표 1] △△△△△ △△ 공영주차장 현황

(단위 : 천 원)

주차장명	위 치	수탁자	계약방법	계약기간	산출 위탁료	적용 위탁료	비 고
△△△△△ △△ 공영주차장	ㄷ 동 148-3	△△△△△ △△ 상인회	수의계약	'19.3.1~ '21.12.31 (매년계약)	'19년 52,346 '20년 45,328 '21년 56,769	'19년 10,422 '20년 6,345 '21년 11,353	위탁료 80%감면

※ 2021년도 △△△△△ △△ 공영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1분기 금액(2,838천 원) 납부

2. 공영주차장 정산 부적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¹⁾ 제22조에 따르면 주차장 등을 위탁받은 상인회는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 계약서」 제14조 제4항에는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서를 1회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동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1항에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²⁾을 따로 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에게 1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 △△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 계약서」 제8조 제6항에는 시장이용자(고객) 및 상인들에 대하여 1시간이내 주차요금을 감면하되, 상인회 자율에 의해 필요금액을 고객이 이용한 상가 측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가 ‘△△△△△ △△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는 ‘△△△△△ △△ 공영주차장’의 수입·지출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상인회원에게만 1시간 주차권을 1장당 50% 할인된 500원의 주차요금으로 징수하고, 상인회 소속이 아닌 상가에게는 할인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1) 2021.8.5.폐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운영지침(고시) 폐지

2) 면제요건 : 1. 긴급자동차, 2.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 부착 자동차

[표 2] '△△△△△ △△ 공영주차장' 상인회·비상인회 주차권 감면 현황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동일한 주차권 감면시
	주차권 수량(장)	주차권 감면액 (천 원)	주차권 미감면 (천 원)	주차권 수량(장)	주차권 감면 (천 원)	주차권 미감면 (천 원)	주차권 수량(장)	주차권 감면 (천 원)	주차권 미감면 (천 원)	
상인회	58,444	29,222	0	52,606	26,303	0	12,572	6,286	0	-
비상인회	13,793	0	13,793	12,336	0	12,336	2,614	0	2,614	14,371

※ 1시간이내 상가 이용시 상인회 소속회원 주차요금 500원/1장, 비회원 1,000원/1장³⁾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 △△ 공영주차장'외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에 대해 구분된 요금 등의 차별적인 요금징수를 점검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상가측에서 1시간이내 주차권을 다량구입하여 상가를 이용한 고객에게 1시간 주차권을 주고 있음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수상레저타운 관리위탁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目目目目과
내 용

안동시 目目目目과에서는 [표 1]과 같이 ‘○○○ 수상레저타운’을 조성하여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에 행정재산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안동시 ○○○ 수상레저타운 현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ㄹ면 ㄱ리 일원• 부 지 면 적 : 캠핑장 23,690m², 수상레저시설 900m²• 캠 핑 시 설 : 카라반(6인용)11면, 글램핑(4인용)12동, 오토캠핑사이트 20면, 관리사무소, 매점 등• 수상레저시설 : 콘크리트퐁툰(600m²), 강화 알루미늄퐁툰(300m²), 관리사무실, 창고 등• 위 수 탁 기 간 : (최초)2017.3.1. ~ 2020.2.29. (갱신) 2020.3.9. ~ 2023.3.8.• 수 탁 운 영 자 : ◆◆◆◆◆(주), ㄱㄴㅇㄹㅁㅂㅅㅇ |
|--|

1. ○○○ 수상레저타운 수탁업체 선정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2016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르면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활용하되 최고가 낙찰자선정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 目目目目과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원가분석 결과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일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반입찰로 하 되, 일반입찰이 2회에 걸쳐 유찰되는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안동시에서는 ○○○○ 수상레저타운 위탁운영을 추진하면서 위탁료 산 출결과 사용료 3,498,000원/년이 산출되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인데도, 온비 드를 활용하지 않고 안동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1차 : 2016. 11. 30., 2차 : 2016. 12. 16.)하였다.

그리고 안동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는 ‘경상북도에 사업장을 두고 수상레저타운(캠핑장, 수상레저 계류장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법 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일반입찰이 아닌 지역제한 입찰을 한 후, 1,2차 모두 단독응찰[◆◆◆◆◆(주) 1개 업체]로 유찰되었다는 사유로 ◆◆◆ ◆◆(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공고 현황

구 분	공고기간	결 과	비고
1차 공고	2016. 11. 30. ~ 2016. 12. 13.	유찰(단독 응찰)	제한입찰
2차 공고	2016. 12. 16. ~ 2016. 12. 19.	유찰(단독 응찰)	제한입찰

2. ○○○○ 수상레저타운 관리위탁 갱신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자치단 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2018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안전부)」 ‘공유 재산 관리’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 료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지 제1호 서 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시 目目目目과에서는 2020. 3. 1. ◇◇◇◇◇◇(주)과 갱신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한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했고, 안동시장의 승인없이 캠핑장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주)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수상레저타운 관리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및 시설 추가(글램핑 4동)에 따른 위탁료 재산정을 위한 관리위탁비 산정 용역(2019. 10. 29. ~ 12. 20.)을 추진하면서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한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2년간(2017, 2018년)의 수입 및 지출을 평균하여 운영수입(a) 215,602,313원, 운영비용(b) 213,042,120원의 차액(a-b) 2,560,193원을 캠핑장 관리위탁비로 산정하였고,

둘째, 2년간 수리수선비가 2,967,243원(2017년 1,683,196원, 2018년 1,284,047원)임에도 추정분 55,750,820원을 추가 산정하여 평균금액 29,359,031원으로 지출금액을 확대하였고,

셋째, 행정재산 위탁관리 지출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원가계산 비목에도 없는 수탁기관의 기부금 71,100,000원(17,700,000원 추정분 포함, 평균금액 35,550,000원)을 지출항목에 포함하여 65,985,603원으로 산출되어야 할 사용료가 63,425,410원이 줄어든 2,560,193원으로 산출되었음에도,

상기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바로잡지 않고 2019. 12. 20. 용역 결과에 대한 감사조서를 작성하고 준공처리 하였다.

[표 3] ○○○○ 수상레저타운 이용료 수입 현황

(단위 : 원)

연 도	이용료 순이익	이용료 수입	지 출	비 고
합 계	484,488,328	938,026,820	453,538,492	
2019년	79,326,827	207,004,532	127,677,705	
2020년	188,713,827	320,736,897	132,023,070	
2021년	216,447,674	410,285,391	193,837,717	

또한 [표 3]과 같이 캠핑장 이용료를 안동시장의 승인없이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받은 ◇◇◇◇◇◇(주)의 수입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용료 수입 정산 및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3. 행정재산 관리 위탁 사후관리 소홀

「○○○○ 수상레저타운 위수탁운영 협약서(2020. 3. 6.)」 제11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에 따르면 수탁자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위탁자에 사업운영계획서와 수지계산서를 제출하되 제1차 년도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협약서 제17조(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에 따르면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에서는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수탁운영자와 계약체결 이후 매년 12월 20일까지 수탁자로부터 사업운영계획서와 수지 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1차 년도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받아야 했다.

그런데 안동시 ㉔㉔㉔㉔과에서는 2017. 2. 27. 협약 체결일로부터 매년 12월 20일까지 수탁자가 사업운영 계획서와 수지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감사 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주)에서는 2019. 12월에 작성된 ‘○○○○ 수상레저타운 관리위탁비 산정 용역 보고서’의 기부금 지출금액 35,500천 원을 초과하여 2021년 96,200천 원, 2022년 100,200천 원을 마을주민들에게 상품권⁴⁾으로 지급하고

4) 2019년 ㉓1리 마을협의회 및 ㉓2리 마을회에 기부금 35,400천 원 계좌이체

있으며,

행정재산 관리를 위한 인력배치 또한 2016. 12. 28. 입찰 참가당시 제출한 제안서의 성수기 11명, 비수기 7명의 인력배치계획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2019. 6. 1.부터 2019. 12. 31.까지 ○○○(가가. 나. 다다. 생) 1명만 가입되어 있고, 2020. 2.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라라. 마. 바바.생), ■■■(사사. 아. 자자.생, 2020. 8.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고용) 2명만 가입되어 있는 등 행정재산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4. 안전점검 미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흡

「관광진흥법」 제4조,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야영장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 수상레저타운 위수탁운영 협약서(2020. 3. 6.)」 제5조(시설 관리·운영) 및 제16조(안전사고 예방 등)에 따르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각종 화재 및 재해 등에 대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이상유무 발견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에서는 자동차야영시설로 등록된 ○○○ 수상레저타운의 수탁

2020년 □1리, □2리 마을주민에 상품권 35,400천 원 지급
2021년 □1리, □2리 마을주민에 상품권 96,200천 원 지급
2022년 □1리, □2리 마을주민에 상품권 100,200천 원 지급

운영자가 일산화탄소경보기, 전용누전차단기,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 화재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법에 따라 야영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안동시 ㉔㉔㉔㉔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 수상레저타운 내 야영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손전등을 비치하지 않는 등 야영장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등 안전 확보가 미흡하고 이와 관련된 안점점검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경상북도에서 2020. 11. 24. 실시한 ‘2020년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 추진계획(경상북도 ㉔㉔㉔㉔과 - 10084호)’에 대해 ○○○○ 수상레저타운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 등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화재예방 분야에 특별한 지적 및 개선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2021. 1. 7. ‘2020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 제출(안동시 ㉔㉔㉔㉔과-195호)’ 공문을 작성하여 회신하는 등 ○○○○ 수상레저타운의 안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기준에 미흡한 야영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출사과 병해충 예찰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센터
 내 용

안동시 ○○○○센터 ㉠㉠㉠㉠과에서는 관내에서 생산하는 수출용 사과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북송아심식나방 예찰을 목적으로 2020~2022년 기간 동안 ‘수출사과 병해충 예찰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였다.

[표] 수출사과 병해충 예찰사업 용역 추진 현황

(단위 : 천 원)

사 업 명	계약일	계약금액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비고
총 3건		230,500			
2020년 수출사과 병해충 예찰사업	‘20. 5. 27.	84,000	‘20. 5. 27. ~ 11. 18.	(사)F1F1F1F1F1F1 F1F1F1F1F1F1 (F2F2 소재)	1인 견적
2021년 수출사과 병해충 예찰사업	‘21. 5. 28.	79,600	‘21. 5. 28. ~ 11. 30.	“	1인 견적
2022년 수출사과 병해충 예찰사업	‘22. 5. 30.	66,900	‘22. 5. 30. ~ 11. 30.	“	1인 견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⁵⁾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열거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출사과 병해충예찰사업’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 부서에서는 수출사과 병해충 예찰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일반입찰로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출사과 병해충 예찰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농촌진흥청장의 정식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라는 이유로 일반입찰을 거치지 않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5)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특정인은 학술연구의 차별성·특수성 등으로 인해 당해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 뿐인 경우에 그 자를 의미함(조달청 ●●●●과-139, 2012. 2. 8.)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 부과·징수 관리 소홀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안동시 ▣▣▣▣과에서는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상속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징수 관리 소홀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르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써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 ⅢⅢⅢⅢ과에서는 상속 취득세 세원관리를 위하여 사망자 내역, 상속대상 재산 자료, 주민등록망의 상속대상자 등 과세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대사하고, 상속대상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상속 취득세를 적정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직권으로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 1]과 같이 재산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대상자가 상속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18,562,1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표 1] 상속 취득세 부과대상 명세

(단위 : 원)

연번	피상속인	피상속인번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과세표준	부과세액
계	19건				543,688,735	18,562,110
1	AAA	*****	ㄱ면 ㄴ리 3-2	2021. 6. 8.	2,985,920	91,270
2	BBB	*****	ㄷ동 산 144-1 외 2	2021. 6.19.	1,677,314	54,800
3	CCC	*****	ㄹ면 ㄹ리 42 외 16	2021. 6.22.	63,066,398	2,062,340
4	DDD	*****	ㅂ면 ㅂ리 16 외 1	2021. 7.11.	10,909,100	354,330
5	EEE	*****	ㅇ읍 ㅈ리 1101-3	2021. 7.13.	11,131,990	337,400
6	FFF	*****	ㅊ면 ㅋ리 207-1 외 13	2021. 9.03.	118,080,276	4,032,980
7	GGG	*****	표면 ㅎ리 772	2021. 9.11.	3,483,010	137,840
8	HHH	*****	ㅊ면 ㄱ리 768	2021. 9.16.	4,876,000	192,960
9	III	*****	표면 ㅎ리 460-2	2021. 9.23.	12,086,590	452,420
10	JJJ	*****	ㅊ면 ㄱ리 707 외 21	2021. 9.25.	54,478,814	2,120,260
11	KKK	*****	ㅊ면 ㅊ리 627 외 1	2021. 9.27.	16,308,520	590,020
12	LLL	*****	ㄱ면 ㄱ리 132-21 외 1	2021.10.25.	38,706,840	1,347,690
13	MMM	*****	표면 ㄱ리 245-1 외 5	2021.11. 3.	148,005,950	4,902,960
14	NNN	*****	표면 ㄱ리 104	2021.11. 9.	2,521,130	93,760
15	OOO	*****	표면 ㄱ리 705	2021.11.29.	2,205,680	86,210
16	PPP	*****	ㄱ면 ㄱ리 902-2	2021.12. 3.	2,203,808	83,160
17	QQQ	*****	표면 ㄱ리 271 외 1	2021.12. 6.	3,074,400	94,190
18	RRR	*****	ㄱ동 225-7 외 2	2021.12.19.	46,889,775	1,489,890
19	SSS	*****	ㅊ면 ㅈ리 산 41	2021.12.20.	997,220	37,630

※ 감사원은 2021년에 실시한 경상북도 정기감사(2021.11.15.~12.3.)에서 2015.1.1. ~ 2021.5.31.기간 중 발생한 상속 취득에 대해서 상속 취득세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기 자료는 그 이후 기간(2021.6.1.~2021.12.31.) 중 발생한 상속 취득에 대한 조사 결과임.

2. 자경농민 감면 대상 이외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적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감면 대상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 ⅢⅢ과에서는 자경농민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대상 농지에 대한 확인을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감면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7,771,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표 2] 자경농민 착오 감면 추정대상 명세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취득일	용도지역	과세표준	추징세액
계	3건					315,600,000	7,771,830
1	△△△	*****	○읍 ●리 81 외 1	2019.10.15.	제2종일반주거	188,000,000	4,896,030
2	▽▽▽	*****	○읍 ◇리 130-2	2021. 6.16.	제2종일반주거	50,000,000	1,164,880
3	⊙⊙⊙	*****	◆면 △리 574-12	2022. 3.23.	제2종일반주거	77,600,000	1,710,920

3. 자경농민 유예기간내 매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다만,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 ⅢⅢ과에서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받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동시 ⅢⅢ과에서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귀농인 ♣♣♣이 2020. 2. 12. 안동시 ♠면 ●리 6-14외 4필지의 농지(토지 4,168㎡)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2021. 11. 10.부터 ▲▲식당 운영, 식품접객업)하여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2,411,8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5. 농업회사법인 직접미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 ⅢⅢ과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 2021. 6. 1. 안동시 ▲면 ▼리 산 665번지 외 17필지의 부동산(토지 808,150㎡)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22,625,9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6. 농어촌 주택개량자 상시 미거주에 대한 취득세 등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280만 원 한도)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 □□□□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가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 △△△이 2022. 2. 11. 안동시 ◀읍 △리 735번지의 주거용 건축물(건물 89.1㎡)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여(2022. 5. 6. 감면대상 주택 이외의 주소로 전출)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1,897,4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7. 사회적기업 타 용도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 ⅢⅢ과에서는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받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 ‘ⅢⅢⅢⅢⅢⅢ협동조합’이 2020. 8. 28. 안동시 Ⅲ동 200-3번지의 부동산(토지 66㎡, 건물 99.56㎡)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2022. 5. 10. ⅢⅢⅢⅢ(ⅢⅢⅢⅢ 식당 운영)에게 임대하여 경감 받은 취득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2,229,5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8.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상시 미거주에 대한 취득세 등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또는 100분의 50을 경감(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 ⅢⅢ과에서는 납세의무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생애최초로 구입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여 [표 4]와 같이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5,008,9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표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상시 미거주 추정대상 명세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취득일	추정사유	과세표준	추정세액
계	5건					454,458,344	5,008,900
1	㉠㉠㉠	■■■■-*****	㉠동 2-5	2022. 4. 5.	3개월내 미전입	50,000,000	680,000
2	㉡㉡㉡	■■■■-*****	㉡동 229-1 외 2	2022. 4.15.	3개월내 미전입	75,458,344	1,023,850
3	㉢㉢㉢	■■■■-*****	㉢면 ㉠리 643-1	2022. 4.22.	3개월내 미전입	20,000,000	313,030
4	㉣㉣㉣	■■■■-*****	㉣읍 ㉢리 84-1	2022. 5. 3.	3개월내 미전입	134,000,000	1,813,660
5	㉤㉤㉤	■■■■-*****	㉤동 240-2	2022. 5.31.	3개월내 미전입	175,000,000	1,178,360

9. 종교단체 직접미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종교단체 ‘○○○○○○교회’가 2019. 5. 31. 안동시 ■동 535-94번지의 부동산(토지 781㎡)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18,994,7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법에 따른 부과·징수가 누락된 122,522,490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르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를 설립하고, 교육훈련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등을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삭제, 대통령령 제23134호, 2011. 9. 15. 시행)⁷⁾ 및 부칙 제4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 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열거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2021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홍보 및 운영 용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및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위 용역과 관련하여 안동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1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최’ 사업을 추진하였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대통령령 제23051호, 2011. 8. 1. 시행)에 따르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를 1인 견적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

[표 2] 안동시 '2021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사업추진 명세

일 자	주요 내용	소관부서	비고
'21. 5. 12.	경상북도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지 공모신청	☐☐☐☐☐실	
'21. 6. 23.	안동시가 '21년 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	☐☐☐☐☐실	
'21. 6. 29.	'19년 개최지인 ○○시와 박람회 준비 사항 벤치마킹 등 업무협의	☐☐☐☐☐실	'19년도 분담금 (6억 원)
'21. 8. 5.	박람회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균형발전위원회 등)과 개최지(경북도, 안동시)의 업무협의 ⁸⁾ *박람회는 국가행사로 지방비 분담근거가 없으므로 분담금 전액 삭감 등	☐☐☐☐☐실	주관기관 (개최지 분담금) '삭감수용'
'21. 8. 24.	박람회 시·도 설명회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고려 대응' '21. 9. 6.(D-50) 이후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 방법 최종 결정	☐☐☐☐☐실	
'21. 8. 25.	박람회 관련 '안동시 온라인 홍보전시관' 사업예산 확보 ⁹⁾ (예비비 1억 원)	☐☐☐☐☐실	
'21. 9. 9.	산업통상자원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박람회 병행 개최 결정	☐☐☐☐☐실	
'21. 10. 8., '21. 10. 1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박람회 개최지에 3.7억 원 분담금 지원요청 ¹⁰⁾	☐☐☐☐☐실	
'21. 10. 15. ~ 10. 18.	'21년 박람회 개최 관련 사업예산 확보(예비비 2.2억 원)	☐☐☐☐☐실	* 기편성 (0.5억 원) *경상북도 부담 (1억 원)
'21. 10. 20.	'박람회 홍보 및 운영 용역' 관련 ☐☐☐☐☐☐☐☐☐ ¹¹⁾ 와 1인 건적 수의 계약을 ○○과에 요청 * 사유 : 산업발전법 제32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실	박람회 주관기관 활용
'21. 10. 22.	'박람회 홍보 및 운영 용역' 관련 ☐☐☐☐☐☐☐☐☐와 1인 건적 수의계약 (계약금액 : 2.7억 원)을 체결	○○과	
'21. 10. 25. (착수일) ~ 12. 7. (완료일)	박람회 행사 용역 등 사업추진	☐☐☐☐☐실	

8) ○ 주요 논의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

- 분담금 협의 : 개최지 분담금 조정 건의
 - 코로나19 상황으로 온·오프라인 행사 진행 감안에 따라 분담금 조정 필요
 - 국가행사로 지방비 분담근거 없음(개최지 공모 경쟁 이후 분담금 발생) ※ 개최지 분담금 : ○○시 6억 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개최지 분담금 전액 삭감 또는 최소화 수용
- 코로나19 방역단계별 박람회 개최 가이드라인 결정(안)
 -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오프라인 전시물 제작을 병행
 - 계약을 통한 전시부스 제작 및 운영 시행사 선정 등 시간 부족
 - 거리두기 2~3단계 감안 대응 행사 계획 수립, 사무관리비(교통, 홍보, 이동화장실 설치 등), 행사운영비
추경 반영(2억 원) 및 온·오프라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용역은 예비비 사용(2억 원, 8월 중)
 - ※ 용역 발주 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전환 내용 포함 진행

그런데 안동시 ㉠㉠과에서는 ‘2021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 개최 결정이 늦어졌고, 당초 업무협약 상 결정된 개최지 분담금 삭감에 대한 내용이 박람회 개최일 2주 전에 반복되었으며, 일정이 촉박하여 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추진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과 경쟁입찰을 통해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실의 사유로 「산업발전법」 제32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을 근거¹²⁾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검토하여 2021. 10. 22. ㉠㉠㉠㉠㉠㉠와 부적정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안동시 홍보관 설치·운영(2021. 9. 6.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추진)

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33(2021. 10. 8.)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12(2021. 10. 12.)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7억 원 분담금 지원 요청 내역 >

- 박람회 개최 장소 텐트 설치 시설비 : 1억 원

- 언론 홍보비(중앙 일간지, SNS 홍보 등) : 2억 원

- 정책박람회 운영 및 홍보비 : 7천만 원

→ 예비비 사용 계획 : 2.2억 원(균형위 요청 분담금 3.7억 원 중 0.5억 원은 기편성 예산 사용, 경상북도에서 박람회 개최 텐트 설치비 1억 원 부담, 2.2억 원 안동시 예비비 사용)

11) 2021년 균형발전박람회사업 협약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12) 「산업발전법」 제32조 제5항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을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구매·관리 등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안동시 ☐☐☐☐과에서는 2019 ~ 2022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를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제작·구매하고 있다.

1. 종량제 봉투 제작·구매 계약 체결 부적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물품 공급계약(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공급업체)로부터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의 납품업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조, 제3조 및 제6조, 제10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¹³⁾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이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경쟁에 참여하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판로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제품을 말함

도록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제안을 요청받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되, 최대 10% 범위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5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회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3자단가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구매할 것이 아니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구매¹⁴⁾하면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이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함에도 ‘종량제 봉투 판매 위탁업체(●●●●●●●●협동조합)의 보관장소가 협소하고 종류별 사용시기가 상이하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공공재로서 필요 시 적기 공급이 가능한 지역업체와 소규모로 분할하여 구매계약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아래 [표]와 같이 1회 구매 시 1억 원 미만으로 수차례 분할하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제3자단가계약으로 부적정하게 구매하였다.

14)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구매 방법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계약자가 선정(제3자단가계약 또는 2단계경쟁)되면 사업부서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인쇄할 동판을 제작기간 동안 계약자에게 전달한 후 사업 완료 시 회수함

[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구매 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시행	계약상대자	예산과목	조달물품 계약유형	2단계경쟁 제안요청 여부
	총 27 건	1,500,647천 원						
1	쓰레기종량제봉투(공공용)구입	20190708	10,200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2	타는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 (가연성일반,음식물,재사용)	20190710	21,325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3	타는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	20190725	25,800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4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	20190827	75,910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5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 (가연성,재사용,공공용)	20191030	46,380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6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 (가연성,음식물,재사용)	20200103	97,015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7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공공용)	20200206	35,930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8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가연성, 음식물,재사용)	20200312	98,160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9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가연성, 음식물,재사용)	20200616	92,227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10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가연성, 음식물,재사용)	20200915	93,570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연번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시행	계약상대자	예산과목	조달물품 계약유형	2단계경쟁 제안요청 여부
11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공공용)	20201019	17,850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12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가연성, 음식물,재사용)	20210107	96,971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13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공공용)	20210219	32,950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14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구입 (가연성, 음식물, 재사용)	20210322	96,931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15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구입 (가연성, 음식물, 재사용)	20210514	95,216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16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구입 (가연성, 음식물, 재사용)	20210910	89,796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17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공공용)	20211012	19,710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18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구입 (가연성, 음식물, 재사용)	20211022	72,111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19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구입 (일반용)	20220118	40,356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20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구입 (무료용)	20220118	24,208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21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구입 (일반용)	20220307	77,517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연번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시행	계약상대자	예산과목	조달물품 계약유형	2단계경쟁 제안요청 여부
22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구입 (일반용 외)	20220418	65,617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23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구입 (공공용)	20220422	12,750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24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구입 (판매용)	20220622	66,478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25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구입 (무료용)	20220802	24,430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26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구입 (공공용)	20220805	12,750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27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구입 (판매용)	20220920	58,489	제3자단가 계약	(주)○○○○○ (●●소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재료비/재료비	다수공급자 계약	부

※ 안동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종량제 봉투 인쇄원판 및 재고조사 등 관리 부적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의 종류, 양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하고,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¹⁵⁾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9. 4. 8. 환경부)」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자치단체별 품질 관리 및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시스템 도입 및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 유통 방지 시스템 도입¹⁶⁾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시 적정 소요량 산출, 관리방법, 불법 유출 방지 등을 고려하여 연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안동시 과에서는 ‘과 명칭 변경 및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한 인쇄원판(동판)을 신규 제작 하였음에도 신·구 인쇄원판 불출대장 및 민간제작업체와의 인쇄원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아 인쇄원판의 불출 내역을 알 수 없으며, 종량제 봉투에 대한 현물과 장부상 재고 차이에 대한 원인 파악 후 재고관리기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재고와 현물이 일치하도록 제작, 판매, 교환, 처분 등 재고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2022. 12. 9. 판매위탁 및 민간제작업체¹⁷⁾ 현지 출장 시 자체 매뉴얼 없이 판매위탁업체의 재고목록에만 의존하는 등 종량제 봉투 재고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2022. 9. 20. 계약 이후 종량제 봉투 제작 구입 시

15)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도7430 판결)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를 자치단체장 명의의 공문서로 보고 있으므로 시의 상징 등이 포함된 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한 동판은 「안동시 공인 조례」에 따른 일종의 공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으로 안동시 과에서는 인쇄원판(동판)을 공인과 같이 철저히 관리하고, 종량제 봉투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회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6) 가)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 유통 방지 시스템 도입

(1)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

(2) 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

(3) 봉투 제작 시 담당자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사용(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봉투 겉면에 표시)

나)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금지

(1) 민간 제조업체와 계약 체결시 종량제 봉투 불법제작 금지의무 하도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불법 저작시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계약서에 명시

(2) 제작업체는 종량제 봉투 제작기간 중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

- 제작일지에는 제작 시 종료시간, 일일 생산량, 봉투 불량품 발생량, 점검자 성명 등을 기재하되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제작사용

(3)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여 관리(인쇄원판 불출대장, 이계인수서 작성 등 필요)

17) 판매 위탁업체 : ○○○○○○협동조합(●● 소재) / 미가제작업체 : (주)○○○○○(●● 소재)

행 품의가 없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민간제작업체에 인쇄원판이 배부되어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민간제작업체 임의로 인쇄원판을 활용하여 종량제 봉투가 수차례 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종량제 봉투의 불법 유통·제작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 재고 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재고관리기준(매뉴얼) 등이 정비되지 않거나 판매위탁 및 민간제작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종량제 봉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종량제 봉투 제작 등과 관련하여 인쇄원판 출납대장 및 인계인수서 작성, 인쇄원판의 봉인을 철저히 하여 보관·관리하고, 현물과 장부 상 봉투 재고 차이에 대한 원인 파악 후 재고관리기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재고와 현물이 일치하도록 재고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안동시●●●●●●●●●● 민간위탁료 산정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안동시 ■■■■■과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된 안동시 ●●●●●●●●●● 관리사무에 대하여 2014년부터 [표 1]과 같이 ○○○○○○○○○○○○○○○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안동시 ●●●●●●●●●● 관리사무 민간위탁운영 계약체결 현황

수탁기관 (대표자)	계약 방법	위탁 기간	위탁금 (백만 원)	시설현황	위탁내용
●●●●● ●●●●● (○●●○)	공개 모집	2014.11.1. ~2023.6.30. (1차: '14.1.1.~'17.6. 2차: '17.7.~'20.6. 3차: '20.7.~'23.6.)	220	- 행정재산(공공용) - 건물면적 1,468.26㎡ - 지하1층, 지상3층 - 사무실, 취미교육실, 컴퓨터 교육실, 회의실, 헬스장 등	- 근로자를 위한 편익시설 제공 (사무실, 회의실 등) - 근로자의 경제·사회·교양·문화 등 후생복지 증진 - 기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반 - 안동시 □□□□□□□□ 운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2019. 12. 9.)」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같은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법(제15794호, 2018. 10. 16.)」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을 할 때에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원가 계산을 할 때에는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등 해당 재산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입액으로 결정한 수입과 인건비, 경상경비(수선유지비 포함), 공과금(세금, 보험료 포함) 등의 지출에 기초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원가 계산을 토대로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고,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을 산정하여 계약 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안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안동시 ●●●●●●●●●●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위 부서에서는 ‘2020년 안동시 ●●●●●●●●●●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계획’을 수립¹⁸⁾하면서 위탁조건에 ‘복지관 운영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복지관의 관리·운영과 근로자 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제시하여 공모절차를 진행하였고 ●●●●●●●●●●(대표자 ●●●)가 선정되었다.

18) ■■■■■과-22015(2020.4.17.)호

그 후 안동시 □□□□□과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4조 및 제5조에 ‘수탁자는 「안동시 ●●●●●●●●●●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한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전반의 관리 운영비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¹⁹⁾에 의거 수익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안동시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경비 등으로 충당한다’라는 규정만을 두고 별도 연간 위탁금액과 원가산정을 위한 수익금 정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위 부서에서는 수탁자에게 [표 2]와 같이 헬스장 및 회의장 대관료 이용수익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 수익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에 근거한 정확한 원가산정 없이 매년 수탁자의 사업계획서, 전년도 보조금 정산서 등을 토대로 위탁료를 지원하였다.

[표 2] 안동시●●●●●●●●●●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수입				지출				비고
	계	위탁금	이용료 수입	기타 ²⁰⁾	계	인건비	복 지 사업비	사업비 등	
2014년	267,437	145,000	121,237	1,200	282,512	145,435	27,472	109,605	고용노동부 제출
2015년	275,011	145,000	123,273	6,738	275,011	150,335	37,376	87,300	고용노동부 제출
2016년	352,319	210,000	118,059	24,260	340,393	182,909	59,805	97,679	고용노동부 제출
2017년	381,246	210,000	129,246	42,000	381,246	163,410	16,978	200,858	고용노동부 제출
2018년	477,987	220,000	156,817	101,170	477,987	239,889	80,000	158,098	고용노동부 제출
2019년	522,862	220,000	158,163	144,699	522,862	233,714	140,000	149,148	고용노동부 제출
2020년	476,016	220,000	25,770	230,246	447,321	184,535	166,318	96,468	감사자료 제출
2021년	407,475	220,000	45,834	141,641	404,176	176,496	133,000	94,680	감사자료 제출
2022년	263,433	220,000	43,433		-	-	-	-	감사자료 제출

※ 안동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수탁자에게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복지관의 관리·운영과 근로자 복지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방만하게 운영되지는 않았는지 등 매년 점검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19)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20) ◇◇◇◇중개센터, ◇◇◇◇학교, ◇◇◇◇행정학습센터 운영 등 시 보조금 및 법인전입금 등(2019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 운영실적 보고서 참조)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이용료 수입현황과 사용내역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위탁료 산정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민간보조사업 예산편성 절차 및 보조금 교부결정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안동시 ■■■■과에서는 지역 내 바이오·생명 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1] 경북 바이오·생명 엑스포 운영사업 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주요내용	비고
		합계	도비	시비		
경북 바이오·생명 엑스포 운영사업	(재)◆◆ ◆◆◆◆	1,000	500	500	- 박람회 운영 - 컨퍼런스 운영(백신포럼 포함) - 기업상담회 개최	민간경상 사업보조

1. 예산편성 절차 미준수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3조에 따르면 시·군의 경우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시·도에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경북 바이오·생명 엑스포 운영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경상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1. 10월 말 경상북도의 사업 제안으로 급하게 기획

되었다는 이유로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²¹⁾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후 2022. 5. 30. 경상북도로부터 투자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2. 보조금 교부결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 9. 6.)」 제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및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12조 따르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령, 조례 등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위 부서에서는 2021. 10월 말 경상북도의 사업 제안으로 ‘경북 바이오·생명 엑스포 운영사업’을 보조사업자가 미확정된 상황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억 원(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2. 2월 보조사업자가 (재)◆◆◆◆◆◆◆◆(이하 “◆◆가나”로 한다.)로 결정이 되었고, 2022. 4. 14. 경상북

21) 2022년 정기 제1차 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사의뢰서 제출(경상북도 ☆☆☆☆관-14311(2021. 11. 17.)호) 요청에 따라 2021. 12. 15.까지 제출 기회가 있었으나 당시 제출하지 않음

도-안동시-◆◆가나 간 ‘2022 바이오·생명 엑스포 운영 사업업무 협약²²⁾’를 체결한 후 위 부서는 2022. 5. 31. ◆◆가나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²³⁾을 받아 2022. 6. 16.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²⁴⁾를 하였다.

그런데, 보조금 교부신청 시 ◆◆가나에서 [표 2]와 같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기관운영간접비 40백만 원과 협약 체결 전인 2022. 3월달 인건비 9백만 원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교부결정 및 교부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비 40백만 원이 지원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표 2]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단위 : 천 원)

지출비목	금액	산출내용	비고
합계	1,000,000		
인건비	90,000	12명 월 지급액 × 참여율 × 10개월(3.1~12.31)	
전문가 활용비	7,500	평가위원 수당	
회의행사비	12,000	회의식대 및 다과	
인쇄 등	3,500	보고서 등	
기타수수료	9,000	회계법인 위탁정산 등	
홍보물제작	22,000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제작	
국내여비	6,000	관내, 관외 출장	
일반용역비	810,000	행사장 설치 용역	
간접비	40,000	기관운영간접비(총사업비의 4%)	

22) 경상북도, 안동시(주최기관), ◆◆◆◆◆◆(주관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사업기간 2022.3.1~2022.12.31.
(행사: 2022.10.13.~15., 안동시 일원), 사업내용, 역할분담, 사업비, 관계법령 준수 등을 명시

23) ◆◆◆◆◆◆ ★★★★★★★★★★센터-917(2022.5.31.)호

24) 안동시 ■■■■과-3336(2022.6.16.)호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간접비 및 보조금 사전 사용승인 전 사용된 인건비 등 49,000,000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 등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안동시 ▲▲과에서는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재해방지 조치나 복구 명령, 복구설계서 승인, 복구비 예치,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복구 대집행 등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사법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토석채취허가·신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이하 복구의무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 할 수 있으며, 복구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으며,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한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²⁵⁾를,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²⁶⁾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²⁷⁾를 각각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 복구의무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

25)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토석채취허가·신고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면제)

26)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제42조(복구준공검사)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하고 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불법산지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등 복구비의 예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구의무자로부터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복구명령, 복구설계서 제출 및 승인, 복구비 예치,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 행정절차에 따라서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안동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안동시 ☐읍 ☐리 산154 외 4필지 등 5건의 불법산지전용지를 복구하면서 복구설계서 미제출(4건), 복구비 미예치(5건), 준공검사 미실시(2건), 하자보수보증금 미예치(4건)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절차 부적정 내역

연번	불법산지전용 내역				조치사항						비고
	불법전용지	피해 발생일 (사건번호)	피해면적 (㎡)	행위자	복구명령 여부	복구설계서 제출여부	복구비 예치 ²⁸⁾ 여부	복구 여부	준공검사 여부	하자보증금 예치 ²⁹⁾ 여부	
1	☐읍 ☐리 산154 외 4필지	2019.05월경 (2019-009)	6,197	♣♣♣	부	부	부	여	부	부	
2	☐면 ☐리 산81 외 2필지	2018.11월~ 2019.3월경 (2019-013)	3,779	◎◎◎	부	여	부	여	여	여	
3	☐면 ☐리 산45-1	2020.05.25. (2020-015)	3,629	◆◆◆	부	부	부	여	여	부	
4	☐면 ☐리 산81	2018.10월 ~2019.3월경 (2019-005)	1,363	▣▣▣	부	부	부	여	부	부	
5	☐면 ☐리 산135	2018.3월경 (2020-001)	1,619	●●●	부	부	부	여	여	부	

※ 안동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안동시 ☐면 ☐리 산11-1번지 외 1필지 등 불법산지전용지 4개소에 대하여는 복구명령이나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28) 복구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은 경우 면제

29)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비의 4%에 해당하는 금액(1백만 원 미만인 경우 면제)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 등 산지복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불법산지전용지 미 복구지 현황

연번	불법산지전용 내역				조치사항		비 고
	피해 소재지	피해 발생일 (사건번호)	피해면적 (㎡)	행위자	복구명령 여 부	복구상태	
1	자면 파리 산11-1번지 외 1필지	2019.2.25.~3.1. (2019-004)	4,500	◆◆◆	부	미복구	
2	해면 리 산45번지	2014.05.불상일 (2019-014)	480	◆◆◆	부	미복구	
3	동 산132 외 1필지	2018.9.~10. (2021-049)	1,060	◆◆◆	부	미복구	
4	동 산14 외 1필지	2020.3.3.경 (2020-006)	945	□□□	여 (1회 2020.06.12.)	미복구	

※ 안동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불법으로 훼손된 5건의 산림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불법산지전용지 4곳은 감사일 현재까지도 원상 복구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미복구된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련 민원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안동시 ▽▽▽▽▽과에서는 관련 법에 의거 체육시설업 신고 및 그와 관련 된 민원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체육시설업 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무도학원업 등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과 「2020년 체육시설업 업무편람(2020. 5.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무도학원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위락시설’ 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무도학원업 체육시설업을 신고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위락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반려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2. 6. 30. 신청인 ‘◆◆◆◆’이 안동시 ㉠면 ㉡길

12-4에 ‘○○ ○ ○○ ○○○○○○○’라는 무도학원업 체육시설업 신고서를 접수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위락시설이 아닌 ‘점포’였음을 1차 확인했음에도 수리거부하지 않았고, 현지 출장을 통한 2차 확인 시에도 체육시설업 시설검사표에 ‘위락시설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검사표를 작성하여 2022. 7. 4. 무도학원업 체육시설업 신고를 수리하였다.

2. 체육시설업 관련 민원처리 부적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에 따르면 배드민턴의 경우 체육교습업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신고 가능한 체육시설업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민신문고 등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공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안동시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 11. 11. 민원인 ‘○○○’이 국민신문고(1AA-****-*****)로 제기한 ‘불법 배드민턴 사설구장 운영실태 고발 및 단속요청’에 따른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드민턴 사설구장의 경우 체육시설 신고업에 해당되어 단속 등 조치가 가능함에도 2021. 11. 12. 민원인에게 배드민턴 연습장은 체육시설 신고업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및 신고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표] 민원신청 및 답변 현황

일자	민원명 (신고창구)	민원내용	답변		
			답변내용	답변일자	결재
2021. 11. 11.	●●● (국민신문고)	불법배드민턴시설구장 운영실태 고발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 및 신고의무가 없음	2021.11.12	과 장 전 결
2022. 01. 03.	●●● (국민신문고)	담당공무원 답변 어이없고, 추가적 으로 불법배드민턴시설구장 고발	현장출장을 통한 관련 법 조치 예정	2022.1.11.	담당자 전 결

※ 안동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상기 [표]와 같이 2022. 1. 3.에 민원인 ‘●●●’은 ‘2021. 11. 12. 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하여 배드민턴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체육교습업에 해당하는데 안동시 담당공무원(실명언급)의 답변은 어이가 없다’면서 불법배드민턴 시설구장 2곳에 대한 단속을 재차 요청하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1AA-****-*****)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안동시 ▽▽▽▽▽과에서는 2022. 1. 11. 담당자 1인 전결로 ‘현장출장하여 확인해 본 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처리 하였다.

또한, 2022. 1. 11. 현장출장 후 ‘■■■■■■■■■■’의 경우 대표자와의 통화를 통해 현재영업중이 아님을 확인했고, ‘▣▣▣▣▣▣’의 경우 저녁에 영업을 하는 관계로 추후 행정지도 및 계도를 통해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으로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2022. 1. 11. ‘▣▣▣▣▣▣(▣▣▣▣▣▣)’를 수신자로 하는 체육시설업 신고안내 공문을 전자문서로만 처리하고 과태료 대상에 따른 신고독려 안내문은 미발송하는 등 관련 민원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수리되지 않아야 할 무도학원업이 신고수리되어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부적정한 민원처리 등으로 인해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및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안동시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을 2020년에 준공하고 선정절차에 따라 ㉠㉠㉠㉠㉠㉠협동조합(조합장 ㉠㉠㉠)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 ㉠㉠㉠을 위탁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표] ㉠㉠㉠ ㉠㉠㉠ 조성 현황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시설	위수탁 관련	
					수탁자	수탁기간
㉠㉠㉠ ㉠㉠㉠ 조성(35,298㎡)	안동시 ㉠면 ㉠리	2012~ 2020	337억 원 (국 220, 도 28, 시 89)	한옥체험관(6동), 민가촌(4동), 식당, 카페, 주막 등	㉠㉠㉠ ㉠㉠ 협 동 조 합	2020. 11. 1 ~ 2024. 12. 31

1. 관리수탁업체 선정 공고 부적정

「2020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안전부)」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위탁료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의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을 활용하되 최고가 낙찰자선정방식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관리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수탁자 선정 공고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 8. 24. ~ 9. 7. 기간 ㉠㉠㉠ ㉠㉠㉠㉠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과 관련하여 원가분석 결과가 33,318천 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인데도 온비드시스템이 아닌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하였다.

2. 사용료 감면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과-1523(2020. 3. 31.)호 및 경상북도 ○○과-1373(2021. 1. 15.)호와 관련하여 「제2차 코로나19 피해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 계획에 따라 안동시 ○○과에서도 2021. 2. 16. 대기업, 공기업, 공사, 금융기관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안동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안동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추가감면 지원 공문[○●과-3584(2021. 2. 24.)호]을 안동시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등으로 발송하였다.

한편, ㉠㉠㉠ ㉠㉠㉠㉠ 위탁 업체 모집(2020. 8. 24. ~ 9. 7.) 및 선정에 따라 ㉠㉠㉠㉠㉠㉠협동조합(조합장 ○●○)이 2020. 9. 제출한 ㉠㉠㉠ ㉠㉠㉠㉠ 관리위탁 운영제안서 ‘4-1 매출액 및 수입금 관리방안’ 편에는 ㉠㉠㉠ ㉠㉠㉠㉠ 운영매출은 초기 운영 1~2년은 배제하여 추정하였고, 초기운영기간(2021년~2022년)은 총매출액과 지출 비용 추산 가정 하에 영업이익 발생 기대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다가, 2023년도부터 영업이익 발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같은 운영제안서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부분에서는 F2F2F2F2F2 F2F2(주)에서 2020. 9. 7. ㉠㉠㉠㉠㉠㉠협동조합(조합장 ○●○)의 업종은 금융업이고

주요매출품목으로는 일반금융 및 기타여신금융업이라고 기업 정보를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의 방침, 그리고 안동시 공유재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업무를 추진 하여야 하며, 만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용료 감면 등의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을 분명히 밝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1. 4. ○○○○○○○협동조합(조합장 ○○○)이 신청한 사용료 감면신청서 첨부자료의 사업자등록증은 ○○○○○○○협동조합(조합장 ○○○)이 수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한옥체험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한옥체험관)으로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사용료 감면신청서 상의 신청인 명의로 ○○○○○○○○○협동조합(조합장 ○○○)임에도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등에 대한 권한이 없는 ‘○○○○○○○○ 한옥체험관’의 사업자등록증을 증빙자료로 인정하여 2021. 4. 20. 사용료 15,000천 원을 감면 처리 하였다.

3. 관리위탁협약서 이행여부 확인 등 수탁기관 관리·감독 부적정

2020. 10. 안동시와 ○○○○○○○○○협동조합(조합장 ○○○)이 체결한 ‘안동시 ○○○○○○○○○ 관리위탁 협약서’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AA’은 수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책임자를 선임(변경하는 경우)하여 수탁운영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고 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목표설정과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안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안동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수탁자인 ○○○○○○○○○협동조합(조합장 ○○○)이 수탁운영 개시 전까지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 통보했는지를 확인하 되 매년 12월 31일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목표설정과 기구·인력운영 및 시설안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했는지도 확인하여 관련 내용이 이행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협약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업무를 철저하게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수탁자인 [X][X][X][X][X]협동조합(조합장 [O][O][O])이 감사 일 현재까지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 통보하지 않고, 2022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목표설정 및 기구·인력운영, 시설안전관리계획이 없는 단순 시기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으로만 구성된 [X][X][X] [X][X][X][X]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2022년 2월경에 제출하였음에도 운영책임자 선임통보 요청 및 사업계획서 보완 등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협약서대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료 감면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특정업체가 특혜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부당하게 감면된 공유재산 사용료 15,000,000원을 추가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안동시 ■■■■■과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수리 및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부적정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3]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³⁰⁾ 미만의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내용 변경 시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시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신고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³¹⁾하거나 거주하고 있는지, 규모는 적절한지, 농어촌민박 기본시설을 설치했는지 등 갖추어야 할 사업 요건을 확인한 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했다.

30)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미만이어야 함

31) 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2. 8. 24. ‘AA AAA 펜션’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교부하면서,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거주 여부, 민박 규모, 시설 기준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주택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검토해야 함에도 서류나 시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표 1] 농어촌민박 신고내용 미확인 사업자 현황

(단위 : m², 실)

상호	지정일자	소재지	운영자	연면적	객실 수	비 고
AA AAA 펜션	2022.08.24.	안동시 A면 C로 1428	□□□	147.63	1	- □□□, ●●● 공동명의 (각각 소유권 지분 1/2 보유) -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또한, 신고인이 거주하는 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에 대해서만 객실로 지정해야 하는데 아래 [표 2]와 같이 신고인이 거주하는 방을 포함한 전체 방을 모두 객실로 지정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인의 거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신고수리를 하였다.

[표 2] 농어촌민박 객실 수 지정 부적정 사업자 현황

(단위 : 실)

상호	지정일자	소재지	운영자	전체방 수	객실 수	비 고
합 계		3개소				
DDDD	2022.02.11.	안동시 ㉠읍 ㉡길 150-16	▶▶▶	6	6	
EEEE (FF펜션)	2022.02.15.	안동시 ㉢면 ㉣길 31-1	◀◀◀	3	3	
GGG GG	2022.07.28.	안동시 ㉤면 ㉥길 404	▲▲▲	2	2	

※ 안동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공동명의자인 ●●●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고인 □□□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등 주택 소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으며, 거주 여부, 시설 현황도 파악하지 않은 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 사후관리 부적정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같은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거나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9년~2022년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사후관리 이행점검 항목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 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소방서, 위생 담당기관 및 부서, 건축 담당부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운영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신고된 내용과 달리 시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년~2022년 기간 동안 매년 동절기, 하절기 2회 농촌관광휴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해당 읍면 농어촌민박의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대형 숙박업소 운영, 농촌지역에 실거주하지 않는 도시민의 농어촌민박 운영, 불법건축물 및 무단용도변경, 불법야영장·수영장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중인 사업장의 유무 등을 점검해야 함에도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자체 안전점검만 실시하는 등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펜션’ 등 10개소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당초 신고내용과 다르게 객실 수 및 면적을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당초 신고한 대표자가 아닌 다른 대표자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등 시설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조치 등의 농어촌민박사업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농어촌민박 신고내용 위반사업자 현황

(단위 : 실)

민박명칭	지정일자	민박소재지	운영자	변경 미신고 객실 수			비고
				신청	실제	초과	
합 계		10개소		26	45	19	
 펜션	2011.05.20.	안동시 ●면 ▲길 78-31		3	6	3	객실수 초과
 민박	2015.06.26.	안동시 ●읍 △길 25-18		2	4	2	객실수 초과
	2016.07.01.	안동시 ●읍 ◎로 1796		3	5	2	객실수 초과
	2016.11.01.	안동시 ○면 ◎길 83		3	4	1	객실수 초과
 펜션	2016.12.27.	안동시 ●면 ○길 162-142(●리 619)		1	2	1	객실수 초과
	2017.10.25.	안동시 ●로 4406(●동)		5	12	7	객실수 초과
	2021.02.01.	안동시 ●읍 ◎로 1639		1	2	1	객실수 초과
GGGGG	2022.07.28.	안동시 ⊕면 ⊕길 404		2	2	-	객실수 초과 (미거주)
AA AAA 펜션	2022.08.24.	안동시 A면 C로 1428		1	3	2	객실수 초과
	2019.08.16.	안동시 ◆면 ◆1길 6-9		5	5	-	대표자 상이

※ 안동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시설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미신고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신고 민원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안동시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안동시 ▲면 ▶리 산 105번지 상에 건축주 □□□ 및 ■■■의 건축신고 2건에 대하여 환경관련법 검토 협조 요청을 ○○과로부터 2021. 2. 18. 접수하고 2021. 6. 8. 보완 의견을 회신한 사실이 있다.

[표] 건축신고 현황

건축주	대지위치	신고일 (신고수리일)	용도	대지면적(㎡)	연면적(㎡)	비고
□□□	안동시 ▲면 ▶리 산 105	2021.2.17. (2022.1.15.)	근린생활시설 (서점)	9,054	1,128	
■■■		2021.2.17. (2022.1.15.)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9,386	380.3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22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 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정한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처리 진행상황 및 회신 예정일 등 협조를 요청한 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건축신고에 따른 협조 요청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과에서 정한 회신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사유·처리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과로 통보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안동시 ■■■■과에서는 협조 요청 내용이 환경관련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이며 회신 내용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하여 「은행법」 제2조 제1항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로, 해당 보완사항에 대하여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법인의 출연 또는 설립자 및 임원, 회사의 소유자 또는 임원 등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여 건축주 약서의 확인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함을 알고 있어 기간을 지체할 사유가 없으며 즉시 회신이 가능하나 보완사항을 신속하게 회신하지 않고 회신요구일인 2021. 2. 23.로부터 105일이 경과한 2021. 6. 8. 회신하면서 지연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 기간 중 확인한 결과 같은 종류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총 98건 처리하면서 회신요구일 이전에 회신한 경우가 32건에 불과하고 1일에서 27일을 지연하여 회신한 건이 66건에 이르지만 지연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등 민원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관리사무소 증축공사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시설물 하자관리 부적정

안동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관리사무소 증축공사’를 ◇◇종합건설(주)와 2019. 8. 23. 계약하고 2020. 4. 17. 준공하였으며, 현재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시설공사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공사기간	사업비(백만 원)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 관리사무소 증축공사	관리사무소 470.72㎡	2019.9.2.~ 2020.4.17.	942	804	138	◇◇종합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임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임회를 거부

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고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에게 하자검사를 위임받은 위 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하자의 발생원인과 조치계획을 제출받고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0. 4. 17. 준공된 ‘♥♥♥♥♥♥ 관리사무소 증축공사’를 관리하면서 2020. 11. 5. ◆◆과로부터 ‘2020년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공문을 접수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2021. 5. 3., 2021. 11. 5., 2022. 5. 6., 2022. 11. 7., 하자검사 실시 공문

을 접수하여 하자검사를 위임받았으나 정기적인 하자검사 4회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 하자검사 2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감사기간 중(2022. 11. 29.) 아래 [사진]과 같이 외벽 화강석 탈락 및 캐노피 전면 누수 등이 확인되었으나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사진] ♥♥♥♥♥♥ 관리사무소 하자 현황

외벽 화강석 탈락	캐노피 전면 누수	캐노피 전면 누수

2. ♥♥♥♥♥♥ 사무실 창호 설치공사 부적정

안동시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 사무실 창호 설치 공사’를 △△△.△.△(▲▲▲)와 2020. 12. 14. 계약하고 2020. 12. 23. 준공하였다.

[표 2] 시설공사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 원)	도급자	비고
♥♥♥♥♥♥ 사무실 창호 설치	창호 및 지붕 설치	2020.12.14.~ 2020.12.23.	4,100	△△△.△.△ (▲▲▲)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을 늘리는 것은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2조,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 지붕 및 창호의 설치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를 이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사무실 창호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붕 및 창호의 설치로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증가되어 증축신고 대상(1층 휴게 공간 22.68㎡, 2층 탈의실 17.82㎡)에 해당되나 착공 전 미리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축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증축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안동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공 사 명	사업량	도급액 (백만 원)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회사	비 고
▽▽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도로개설 L=0.7km (교량 신설 L=105m)	2,752	‘21.12.28.	‘22. 1. 3. ~ ‘23. 6.26.	▼▼종합건설(주) (◁▷▷)	

1.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사용 허가 추진 부적정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³²⁾ 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목적 외 사용의 사유,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목적 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

3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湫: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 기간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10년으로 하고, 당초 사용허가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안동시 ㉠㉠과에서는 ‘▽▽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도로 등의 건설에 편입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2]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대상 현황

시설명	시설 관리자	위치	지목	사용 허가 대상		사용료 (천 원)		비 고
				필지 수	면적 (㎡)	산출	감면	
▽▽ 저수지	안동시장	안동시 ◀면 ▶리 314 외	유지 등	8	3,463	99	49.5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³³⁾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

33)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방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 감독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따른 ①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④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주청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이 발주하는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의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제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안동시 ㉠㉠과에서는 ‘▽▽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3. 시공상세도 미작성·미승인 등 공사감독 소홀

가. 시공상세도 미작성·미승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규정에 따르면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태,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35조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주요구조부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설계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비계·동바리·거푸집 및 가교·가도 등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배수관·암거·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철근 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서,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등 발주청에서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를 시공자가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 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안동시 ㉠㉠과에서는 ‘▽▽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에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14,39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계상하고,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 작성 목록 등을 작성하여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시공상세도를 검토·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을 감액 및 실정보고³⁴⁾ 하지 않고 있다.

나. 가설사무소 미설치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 목적물을 제조·조립·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 단계별 시공 상태,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

3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제23호 규정에 따라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표고·치수의 정확도 확인,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하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안동시 ㉠㉠과에서는 ‘▽▽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는 가설사무실(감독자용, 수급자용, 가설창고, 가설 실험실)을 대신하여 가설 컨테이너(3.0m×6.0m) 4동 설치, 구조물(암거) 터파기 공종이 당초 용수 발파암에서 육상 토사로 현장 여건 변경 등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고, 가설 컨테이너 설치에 따라 가설사무실 부지 정지 비용 및 가설사무소 토지임대료 등이 불필요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감독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관련 공사비 38,76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 및 실정보고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사업 구간 내 편입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를 받으시기 바라며,(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53,150,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탐방로조성사업 보행교 설치공사 토지 보상 협의 부적정 등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〇〇〇〇〇〇〇과
 내 용

안동시 〇〇〇〇〇〇〇과에서는 ‘탐방로조성사업 보행교 설치공사³⁵⁾’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표 1] 토지 보상금 지급 현황

위 치	지목	면적(㎡)		보상액 (천 원)	토지소유자		감정평가 의뢰일 (회신일)	보상 협의일 (사정일)	소유권 이전일	비고
		지적	보상		주소	성명				
안동시 ▷면 ▶리 산130-1	임야	115,659	115,659	237,101	□시 ◆구 *서로 280, 동 호		‘19.10.16. (‘19.11. 7.)	‘20. 3. 5. (‘20. 3. 4.)	‘20. 3.13.	

※ 안동시 제출자료 재구성

1.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³⁶⁾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35) 탐방로조성사업 보행교 설치공사 시행을 위하여 “탐방로조성사업 보행교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하던 중 2021. 11. 8. 타절 준공하여 공사 추진이 불가능함.

3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받아 확정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음.)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토지의 경우 1건당 면적이 1천㎡ 이상 취득일 경우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및 처분³⁷⁾,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탐방로조성사업 보행교 설치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거나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받아 토지를 취득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탐방로조성사업 보행교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안동시 ▷면 ►리 산130-1번지 3,600㎡) 외 전필(115,659㎡)을 협의 취득한 사실이 있다.

2. 편입토지 보상 협의 부적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목(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마목(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①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잔여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안동시 〇〇〇〇〇〇〇과에서는 ‘탐방로조성사업 보행교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보상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았고, 보행교 및 부대시설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사용할 계획으로 토지 전부를 보상하여 토지 보상비 229,721천 원을 초과 집행하였다.

[표 2] 사업 편입토지 외 토지 현황

위 치	지목	면적(㎡)				보상액(천 원)			비고
		지적	보상	편입 면적	편입 외 토지	당초(A)	편입(B)	차액(A-B)	
안동시 ▷면 ▶리 산130-1	임야	115,659	115,659	3,600	112,059	237,101	7,380	229,721	

※ 안동시 제출자료 재구성 (보상액 단가 : 2,050원/㎡, 감정평가 금액)

[표 3] 보행교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현황

공 사 명	사업량	용역비(천 원)		계약일	용역기간	타절일	도급회사	비 고
		계약금액	타절금액					
탐방로조성사업 보행교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1,453,410	881,843	'20. 1.20.	'20. 1.20. ~ '20. 8.18. (용역정지:'20.8.5.)	'21.11. 8.	주)○○○○○○ 외 2개사	타절 사유 ³⁸⁾

※ 안동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8) 탐방로조성사업 보행교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타절 준공 검토 보고(2021. 4. 22.) 시 타절 사유는 ①감
사원감사 결과 추가 산지전용 불가 ②총사업비 조정(사업기간 등) 협의 불가(문체부, 기재부) ③풍동실험 및 지반
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공사비 과다 증가 ④설계안정성검토 및 복잡한 인허가 문제 등 설계 지연 발생 ⑤시·종점부
부대시설 인허가 지연 등 어려움 발생 등임.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안동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 ■■■■■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사업기간	도급자	건설사업 관리자	비고
	읍면	리동						
♡♡2, ■■■■■ 하수관로 정비사업	♡♡		하수관로 L=22.7km 배수설비 481가구	9,084	2022.04.29.~ 2024.07.16.	(주)☆☆ 외 2 ○○○ 외 2	(주)■■■ (■■■■■)	
■■■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	오수관로 L=5.433km 하수처리장 Q=80m³/일	3,572	2022.08.10.~ 2025.02.28.	(주)♡♡건설 (◆◆◆◆)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르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표 2]와 같다.

[표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 5,000 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 7,500 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 10,000 제곱미터 ※ 단,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설치사업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설치 경우만 해당)	사업의 허가·인가·승인 전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2, ■■■■■ 하수관로 정비사업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면 사업 승인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 ■■■■■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계획 면적이 52,097㎡이며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내 사업구역 면적은 29,397㎡으로 계획관리지역 대상면적인 10,000㎡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승인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제86조 제9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종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대로 추진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설계변경 관리 및 시공 확인 소홀

1) ♡♡2, ■■■■■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에서는 ♡♡2, ■■■■■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수관로 설치 구간의 관로 터파기 시공 폭이 당초 0.98~1.8m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관로 터파기 폭을 1.0~1.3m로 일괄 시공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해 구조 및 안전성 검토없이 추진하여 사업비 78,955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 조치 및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하수관로 시공 시 설계에 반영된 안전휨스(L=4,210m) 대신 라바콘을 설치하여 안전관리 업무 추진 및 하수관로 주위 모래다짐은 램머 → 콤팩트를 사용하였으며, 당초 설계에 계상된 현장사무실 집기류(책상, 컴퓨터 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이에 따른 실정보고 및 사업비(안전휨스 미설치 7,190천 원, 다짐장비 변경 6,660천 원. 집기류 비용 미사용 12,520천 원) 총26,37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𠄎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𠄎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또한 하수관로 설치 구간의 관로 터파기 시공 폭이 당초 0.5~2.6m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관로 터파기 폭을 1.3~1.4m로 일괄 시공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해 구조 및 안전성 검토없이 추진하여 사업비 18,985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조치 및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지 않았다.

하수관로 시공 시 설계에 반영된 안전웬스 대신 라바콘을 L=674m 설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당초 설계에 현장사무실(430㎡)을 조립·설치하도록 반영이 되어 있으나, 시공사에서는 현장 여건 상 인근 마을회 농민마트를 30개월 계약·임차하여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정보고 및 사업비(안전 웬스 미설치 2,874천 원, 현장사무실 미정산 38,284천 원) 총41,158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설계도서 검토업무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에서는 𠄎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설을 포함한 관로 설치 구간지반 토질이 현지 지반조사에 따른 실시설계보고서 내 지층분포특성 상 느슨한 상대밀도를 나타내는 실트·점토질 모래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해머 장비를 이용한 가시설 항타작업이 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자갈 및 풍화암층 등에 적용하는 천공장비 사용을 추가하여 반영하는 등 설계도서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 및 설계변경 등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를 하지 않고 사업비 260,561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 총괄수행 지도·점검 미흡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제6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안동시 ■■■■■과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이 부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지도·점검 등의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426,029,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〇〇〇〇〇〇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 부적정 등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〇〇〇〇과
 내 용

안동시 〇〇〇〇과에서는 ‘〇〇〇〇〇〇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엔지니어링 외 3개사와 계약하여 [표 1]과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 1] 용역 현황

용역명	과업량	계약금액 (천 원)	계약일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비고
〇〇〇〇〇〇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식	1,068,113	2022. 7.13.	2022.07.14.~ 2023.07.13.	(주)◆◆엔지니어링 외 3	

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 부적정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9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건설부문 용역비를 산출하는 요율 및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는 직산보간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건설부문의 요율 (실시설계)

공사비	업무별 요율(%)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200억원 이하	3.68	3.25	4.41	4.76	3.04
300억원 이하	3.43	3.15	4.09	4.42	2.81

그런데도 안동시 〇〇〇〇과에서는 하수도 사업의 용역을 발주하면서 요율

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로 적용(도로)하여야 함에도 효율이 높은 상수도 분야로 적용하여 용역비를 104,500천 원 과다 계상³⁹⁾한 사실이 있다.

2. 전차용역 수행실적 관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및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별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르면 ‘전차용역’이란 “해당 설계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 즉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계획, 기본설계용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개념의 용역을 전차용역으로 인정할 경우 모든 상수도 관련 용역, 하수도 관련 용역, 하천 관련 용역의 전차용역이 되어 기본계획 수행업체가 전차용역 배점을 독점하게 되어 공정경쟁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안동시 ■■■■■과에서 시행한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022. 3. 24. 시행)’,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022. 5. 18. 시행)’에 대하여는 ‘안동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세부계획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전차용역을 인정하지 않았고,

‘■■■■■■■■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상위개념의 ‘안동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22)’을 전차용역으로 인정하여 [표 3] 접수번호 13번 (주)◆◆엔지니어링 공동도급 참여사에 전차용역 수행실적 2점(2점 만점)을 부여하였다.

39) 도로부문으로 3.25~3.15%의 효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수도부문으로 4.76~4.42%의 효율 적용

[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 현황 (접수순)

접수번호	업 체 명	접수번호	업 체 명
1	(주)☆☆	8	(주)●●
	(주)★★		(주)◆◆엔지니어링
	(주)○○		(주)■ ■ ■ ■ ■ ■ ■ ■ 종합건축사사무소
2	(주)●●●●엔지니어링		(주)●○●○●○공사
	(주)○○○○○○	(주)▒▒▒▒엔지니어링	
	(주)◇◇	(주)▓▓▓엔지니어링	
3	(주)◆◆◆◆◆◆◆건축사사무소	10	(주)▒▒▒엔지니어링
	(주)□□□□		▨▨▨▨(주)
	(주)■ ■ ■ ■ ■ ■ ■		(주)▤▤엔지니어링
4	(주)△△△△△		(주)▥▥▥▥▥
	(주)▲▲▲▲▲	11	(주)㉠㉠㉠㉠㉠㉠건축사사무소
	▽▽▽▽(주)		(주)㊦㊦
(주)▼▼	(주)㊿㊿㊿㊿㊿㊿건축사사무소		
5	(주)◁◁◁◁공사	12	(주)㊵㊵㊵㊵
	(주)◀엔지니어링		(주)㊶㊶㊶㊶
	(주)▷▷▷▷엔지니어링		(주)㊷㊷㊷㊷
	(주)▶▶▶▶▶▶▶▶건축사사무소		
6	(주)♠♠♠♠♠♠♠종합건축사사무소	13	(주)♦♦엔지니어링
	(주)♣♣♣♣♣♣		(주)♠♠엔지니어링
	(주)♥♥♥♥♥♥		(주)◎◎◎◎◎◎◎◎건축사사무소
7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주)♣♣♣엔지니어링		

그 결과 [표 4]과 같이 전차용역 2점을 받은 (주)◆◆엔지니어링 공동도급 참여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낙찰자를 선정해 본 결과 [표 5]와 같이 최종 낙찰자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공동도급 참여사로 순위가 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낙찰자 개찰결과

순위	업 체 명	예정가격 (원)	투찰금액 (원)	예가 비율	입찰가격 평점	PQ 환산점수	적격 점수	비고
-	(주)☆☆ 등	1,324,286,675	1,063,333,000	80.295	22.29	68.317	90.61	적격점수 미달
-	(주)●●●●엔지니어링 등		1,066,600,000	80.541	22.54	68.490	91.03	"
-	(주)◆◆◆◆◆◆◆◆ 건축사사무소 등		1,066,380,000	80.525	22.52	68.362	90.88	"
-	(주)△△△△△△ 등		1,066,600,000	80.541	22.54	68.490	91.03	"
4	(주)▼▼ 등		1,091,981,000	82.458	24.46	68.374	92.83	
3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등		1,090,000,000	82.308	24.31	68.541	92.85	
2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등		1,089,823,000	82.295	24.30	68.509	92.81	
-	(주)◎◎ 등		1,255,870,000	94.834	23.17	68.266	91.44	적격점수 미달
-	(주)◯◯◯◯◯◯공사 등		1,072,720,000	81.004	23.00	68.349	91.35	"
-	(주)□□엔지니어링 등		1,063,949,000	80.341	22.34	68.310	90.65	"
-	(주)⊠⊠ 등		1,064,600,000	80.390	22.39	68.381	90.77	"
5	(주)@#@#@#@@건축사사무소 등		1,104,000,000	83.366	25.37	68.349	93.72	
1	(주)◆◆엔지니어링 등		1,068,113,000	80.656	22.66	69.827	92.49	

[표 5] 전차용역 수행실적 제외 시 낙찰자 개찰 (추정)

순위	업 체 명	예정가격 (원)	투찰금액 (원)	예가 비율	입찰가격 평점	PQ 환산점수	적격 점수	비고
-	(주)☆☆ 등	1,324,286,675	1,063,333,000	80.295	22.29	68.317	90.61	적격점수 미달
-	(주)●●●●엔지니어링 등		1,066,600,000	80.546	22.55	68.368	90.92	"
-	(주)◆◆◆◆◆◆◆◆ 건축사사무소 등		1,066,380,000	80.525	22.52	68.362	90.88	"
-	(주)△△△△△△ 등		1,066,600,000	80.541	22.54	68.490	91.03	"
3	(주)▼▼ 등		1,091,981,000	82.458	24.46	68.374	92.83	
2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등		1,090,000,000	82.308	24.31	68.541	92.85	
1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등		1,089,823,000	82.295	24.30	68.509	92.81	
-	(주)◎◎ 등		1,255,870,000	94.834	23.17	68.266	91.44	적격점수 미달
-	(주)◯◯◯◯◯◯공사 등		1,072,720,000	81.004	23.00	68.349	91.35	"
-	(주)□□엔지니어링 등		1,063,949,000	80.341	22.34	68.310	90.65	"
-	(주)⊠⊠ 등		1,064,600,000	80.390	22.39	68.381	90.77	"
4	(주)@#@#@#@@건축사사무소 등		1,104,000,000	83.366	25.37	68.349	93.72	
-	(주)◆◆엔지니어링 등		1,068,113,000	80.656	22.66	68.547	91.21	적격점수 미달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운동장 우회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안동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주)와 ‘▼▼운동장 우회도로(◁-▷)개설공사’를 계약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주)☆☆엔지니어링 외 1개사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계 약 금 액	계 약 일	사 업 기 간	도 급 자 (대 표 자)	비 고 (공 정 률)
▼▼운동장 우회도로(◁-▷)개설공사	안동시 ○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L=620m, B=25m	5,512	2021. 6. 7.	2021. 6. 9. ~2023. 9. 18.	▲▲▲▲(주) ○○○	46.8%
◀◀대로(♂-♂호선) 도로확장공사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안동시 ○동 □동	건설사업관리 1식	1,918	2022. 2. 24.	2022. 2. 28. ~2025. 3. 13.	(주)☆☆엔지니어링 외 1개사	

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미이행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⁴⁰⁾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40)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통보 받았을 때 이를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등 협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운동장 우회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2020. 6. 11. 안동시 ◇◇◇◇과로부터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가배수로 등의 재해 저감대책을 개발사업에 반영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설계도서에 협의 내용을 미반영하고, 조치결과를 미통보하는 등 협의 내용을 소홀히 하였다.

2.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90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고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⁴¹⁾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안동시 ◆◆◆◆◆과에서는 ‘▼▼운동장 우회도로(◁-▷)개설공사’를

41)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함.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임에도 품질시험계획을 미승인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부적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⁴²⁾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여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매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직접구매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운동장 우회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수로암거를 현장타설로 시공 시 동절기 한중 콘크리트 품질확보 어려움 등의 사유로 2022. 1. 7. 현장타설암거를 PC암거로 공법을 변경하도록 실정보고를 승인하였고,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을 구입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구입하여 중소기업자 다수의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비 28,200천 원⁴³⁾을 낭비하였다.

42)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음.

4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 87.995% 적용.

4. 발파공법 변경 등 사업 추진 부적정

가. 발파공법 변경 부적정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암굴착을 위하여 수행되는 발파작업은 진동, 폭음, 비산 등의 피해발생으로 환경분쟁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피해를 저감시키면서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적정 발파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건설교통부, 2006. 12.)」을 참조하여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건설교통부, 2006. 12.)」에 따르면 암발파 공법을 지발당 장약량을 기준으로 6가지 타입으로 표준화하고, 보안물건의 허용진동기준과 이격거리에 따라 ‘거리~지발당장약량조건표’에 의거 설계자가 적정 발파공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발파공사 시행 전에는 반드시 시험 발파를 통하여 발파진동 추정식을 구하고, 시공성과 경제성 및 인근 보안물건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발파공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에 따르면 시험발파 및 시공단계에서 시공회사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발파 착수 전 발파영향권 내 보안물건에 대해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고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여 시험발파, 본 발파, 계측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6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관계규정 저촉여부, 안전성 확보여부, 계측계획 적정성 여부 및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시공자로부터 발파작업 전 발파영향권 내 보안물건에 대해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시험발파계획서를 제출받아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험발파를

통해 적정 발파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1. 11. 16. 발파에 따른 아파트 입주민과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균열조사에 대한 실정보고를 승인하면서,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제출받지 않고 시험발파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2022. 3. 29. 주민 집단민원이라는 사유⁴⁴⁾로 [표 3]과 같이 발파공법을 유압식 할암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실정보고를 승인하면서, 시험발파를 하여 환경피해를 저감시키면서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적정 발파공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없이 사업비 약 11억 원을 증액시켰고, 진동에 의한 균열발생 영향이 없는⁴⁵⁾ 유압식 할암공법으로 시공하게 되어 균열조사비 71,434천 원을 낭비하였다.

[표 3] 발파공법 변경에 따른 수량 변경 현황

공 종	단 위	수 량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암발파(미진동굴착)	m³	17,580	-	△17,580	
암발파(소규모진동제어발파)	m³	2,676	-	△2,676	
암파쇄(유압식 할암공법)	m³	2,638	22,894	증20,256	

한편, 안동시 ◆◆◆◆◆과에서는 2022. 10. 27.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 시 저층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도로 정점부를 3m 정도 낮추고 도로 종단경사를 3.5~5.1% 정도로 조정해 달라는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요구 반영 시 추가로 사업비 약 24억 원이 소요될 것을 2022. 11. 4. 안동시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향후 관련 규정⁴⁶⁾을 따르지 않은 채 집단민원이 있다는 사유로만 종단 경사를 조정할 경우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44) 우회도로 관련 대책 주민협의회에서 ‘주민협의회 제2021-1(2021. 12. 27.)호’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시공에 따른 구조해석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 및 발파 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불쾌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파트 경계부분에 고정식 방음벽과 에어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주민들은 발파공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시험발파를 통해 시공성과 경제성 및 인근 보안물건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발파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법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45) 안동시 ◆◆◆◆◆과-4745(2022. 3. 29.)호로 승인된 실정보고 승인사항에 언급되어 있음.

46)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나. 실정보고 승인 전 시공 부적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 따르면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같은 지침 제14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서류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 및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은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실정보고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안동시 ◆◆◆◆◆과에서는 ‘▼▼운동장 우회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2022. 2. 3.부터 실정보고 없이 발주청 방침을 득하지 않은 채 발파공법을 유압식 할암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하였고, 2022. 2. 28.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이후 발파공법 변경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미리 정한 사항을 2022. 3. 1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파공법 변경과 관련하여 적정한 검토없이 제출한 실정보고를 승인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등 품질관리 소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면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안동시 ☆☆☆☆과에서는 2019. 11. 28. ■■■건설(주)와 계약하여 ‘㉠㉠면 ㉠㉠소하천 정비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공사 중에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내용	총공사비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면 ㉠㉠소하천 정비공사	소하천정비 L=1.68km	2,830	1,737	1,093	2019. 12. 16. ~2022. 12. 30 .	■■■건설(주) (●●●)	95%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 ㉠㉠㉠㉠과-4273(2018. 6. 18.)호로 회신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협의내용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는 현장사무소에 협의내용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시 ☆☆☆☆과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며, 협의내용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기록·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면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반영하고, 착공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협의내용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사무실에 갖추어 두지 않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2.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와 20㎡ 이상의 시험실 규모를 갖추고, 초급기술인 이상인 건설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품질관리 부적정 현황

공 사 명	품질시험계획 승인 여부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품질관리자	비고
□□면 □□소하천 정비공사	미수립	미구비	미설치	미배치	

그런데 안동시 ☆☆☆☆과에서는 ‘□□면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위 [표 2]와 같이 품질시험계획을 미수립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설계변경 부적정 등 공사감독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

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고,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안동시 ☆☆☆☆과에서는 ‘□□면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다는 사유로 2020. 10. 14. 출장결과 보고를 하면서 당초 설계자인 ●●엔지니어링의 의견이 아닌 지역 업체인 (주)●●●●●●●●건축사사무소의 의견을 첨부하였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NO.54+0~NO.70+10(좌안) 호안블록 설치 시 지반이 침하된다는 사유로 구조용 강관을 지주 간격이나 지지력에 대한 검토 없이 시공(증17,056천 원)하도록 하였고, NO.54+0~NO.69+0(우안) 용수 발생에 따라 당초 호안블록에서 매트리스로 공법을 바꾸면서 「하천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09년)」에서 구조와 높이를 고려하여 비탈덮기의 연직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최소 비탈경사를 1:2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구조적 안정성 검토없이 비탈경사를 1:1.5로 시공(증6,209천 원)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또한, NO.31+0~NO.71+16 구간 제방 축조 시 잡석을 부설하고 램머로 다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시정하지 않았고, 22,600천 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으로 감액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등 품질관리 소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22,600,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안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안동시 ○○○○○과에서는 ‘안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주)○○○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주)●●이엔씨 외 2개사와 시설공사 계약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용역 및 공사 현황

용역 및 공사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 원)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회사	비고
		계	도급	관급				
안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도매시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식	16,531	13,411	3,120	‘21.12.29.	‘22. 1.17. ~ ‘24. 3. 5.	(주)●●이엔씨 외 2	
안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940	940	-	‘20.12. 3.	‘20.12.11. ~ ‘21.12.21.	(주)○○○건축사 사무소 외 3	
안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1,290	1,290	-	‘22. 5.10.	‘22. 5.12. ~ ‘24. 3.31.	(주)●●●●●●●●●● 종합건축사 사무소 외 2	

1. 기술자문위원회 결과 미반영 후 사업 시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 및 「안동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조사·설계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지방심의위원회(경북도)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안동시)의 심의(자문)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안동시 ~~○○○○~~과에서는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반영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2019년 배정받은 예산(국·도비)을 2021년도 말까지 집행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되는 것을 우려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요청⁴⁷⁾전 공사를 시행⁴⁸⁾(2021. 11. 1.)하였고, 실시설계용역비를 2021년도 말까지 지출하기 위하여 기술자문 위원 의견이 있을 경우 반영해달라는 구두 약속을 한 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표 2] 사업비 배정 및 집행현황

년도	배정액(천 원)				집행액(천 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3,212,000	6,791,000	3,394,500	13,026,500	5,000,934	2,492,579	1,579,790	928,565
2019년	7,378,000	2,040,000	1,353,500	3,984,500	-	-	-	-
2020년	-	-	-	-	527,653	527,653	-	-
2021년	-	-	-	-	2,964,684	1,512,347	1,353,500	98,837
2022년	7,680,000	2,304,000	1,152,000	4,224,000	1,508,597	452,579	226,290	829,728
2023년 이후	8,154,000	2,447,000	889,000	4,818,000	-	-	-	-

2. 기술자문위원회 의견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및 「경상북도 설계실무요령」에 따르면 흙막기 표준경사를 풍화암일 경우 1:0.7~1:1.2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7) 안동시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요청(~~○○○○~~과-10127(2021. 11. 15.)호]

48) 2021.12.29. (주)●●이엔씨 외 2개사와 계약하여 선금급 200,000천 원 지출(2022. 12. 30.)

(1차분 계약금 5,308,663천 원의 37%, 2022.12.30.)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풍화암의 경우 흙막기 경사를 1:1.0으로 적용하도록 의견을 제시⁴⁹⁾하였다.

그런데 안동시 ~~○○○○~~과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흙막기 비탈면(풍화암) 경사를 최대치인 1:1.2로 계획하였으며, 이를 감사 기간 중 1:1.0으로 수정하여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사면 보강 구조물(패널식 옹벽) 설치비 157,000천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3. 품질관리업무 추진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건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공사분류	공사규모	시험장비	시험실 면적	품질기술자 배치기준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0억원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장비	50㎡ 이상	특급1명, 중급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500~1000억원, 연면적 3만~5만㎡ 이상		"	고급1명, 중급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500억원, 연면적 5천~3만㎡ 이상		20㎡ 이상	중급1명, 초급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2~100억원		"	초급 1명 이상

49) 안동시 ~~○○○○~~ ~~▽▽▽▽~~국장이 기술자문위원회 시 흙막기 경사를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그런데 안동시 ~~△△△△~~과에서는 총공사비 100~500억 원으로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현장임에도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검토나 승인 통보를 하지 않았고, 시공자가 관련 법령 및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등 품질관리 소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157,000,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대학원(야간) 위탁교육기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부 서 △△△(○○○○센터)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8항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022. 1. 19.)」에 따르면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을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 청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1회 적발 시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해당 위반행위 1회 적발 시에는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안동시 △△△(○○○○○센터) 지방●●●●●●● ★★☆☆은 안동시로 부터 2022년도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학기당 1,000천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으면서 2022. 3월 ~ 6월까지 ◆◆대학교 ●●●●●대학원(■ ■ ■ ■ 학과) 수업 후 사무실(○○○○○센터⁵⁰⁾)로 복귀하여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초과근무수당 184,8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사적용무(대학원 수업) 후 초과근무 등록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내역

*대학원 수업시간 매주 화요일 18시~21시

연번	일자	출근	퇴근	수당시간 (분)	부정수령액 (원)	가산징수액 (원)	비 고
합계	7건				184,800	924,000	
1	2022.03.22.(화)	09:00	21:25	145	24,640	123,200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6급 12,321원)
2	2022.04.12.(화)	09:00	22:00	180	36,960	184,800	
3	2022.04.19.(화)	09:00	21:27	147	24,640	123,200	
4	2022.05.03.(화)	09:00	21:42	162	24,640	123,200	
5	2022.05.10.(화)	09:00	21:46	166	24,640	123,200	
6	2022.05.24.(화)	08:52	21:48	168	24,640	123,200	
7	2022.06.07.(화)	09:00	21:26	146	24,640	123,200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 ①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주의)
- ② 지방●●●●●●● ★★☆☆이 부정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184,800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가산징수 포함) 하시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50) 안동시 ㉠로 12(▼동 1517-263), ◆◆대학교까지 4.9km